

전공동아리 운영규정

제정 2000. 4. 1.
개정 2001. 4. 4.
개정 2012. 3. 1.
개정 2016. 3. 1.
개정 2018. 3. 1.
개정 2018. 8. 20

제1조(목적 및 의의) 이 규정은 학생의 전공지식에 대한 실용성, 전문성, 기능성을 도모하여 현장실무 교육을 심화하는 동시에 사,학,연,관 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공동아리 (이하 “동아리”라 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자격) 동아리 회원은 본 대학의 재학생으로 하며, 휴학 및 제적시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타 대학 및 기업체 또는 그 연합체의 구성원인 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 대학 동아리 회원으로의 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휴학생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1. 동아리 운영위원
2. 동아리 운영 및 행사에 열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자.

제3조(등록요건)

1. 설립목적은 학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동아리 설립목적 및 연구과제에 대하여 동의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구성한다.
3. 동아리는 해당전공 재학생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과 학생들과 연합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때 지도교수는 스쿨과 관계없이 동아리 전공과 관련된 지도교수를선임할 수 있다.
4. 1개 동아리 정원은 활동에 필요한 적정인원으로 한다.
5.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로 구성하며 타 동아리와의 중복 없이 고유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
6. 모든 동아리는 지도교수를 선임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4조(지도교수 선정 및 임원 선출)

1. 지도교수는 본 대학 전임, 초빙교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도교수가 사임 또는 기타사유로 결위 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후임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동아리 등록 신청서를 담당 부서로 재제출하여야 한다.
3. 각 동아리의 책임 지도교수는 1명으로 하되 동아리와 겸임할 수 있다.
4. 지도교수는 동아리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모든 활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5. 지도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후임 지도교수의 임기는 전임 지도교수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7. 동아리 임원이 선출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담당 부서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규등록) 동아리는 신규등록시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기 중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1. 동아리 등록 신청서(서식1호)
2. 동아리 연간 활동 계획서(서식2호)
3. 동아리 회원 명단(서식3호)

제5조의 1(스쿨전공동아리)①스쿨에서는 자체 전공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신규, 재등록, 행사승인, 등록취소 등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매 학기 스쿨에서는 스쿨 자체 전공동아리 현황을 파악하여 담당 부서에 제공한다.

③스쿨전공동아리에 관련된 사항을 본 규정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재등록) 기존 동아리가 재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5조와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

제7조(행사승인) 동아리 대표자는 행사 7일 전에 행사계획서를 담당 부서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행사) 각 동아리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경진, 기능 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 대회를 개최할 수 있

으며 교내외 동아리 관련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9조(등록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장이 본 대학 학생지도위원회 회의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아리 활동내용이 설립목적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2. 활동이 학칙을 위반하였거나, 학교명예를 손상시켰을 경우
3. 활동실적이 부진하거나, 학생활동 참여실적이 부진할 경우
4. 불법집회로 인하여 사법적 절차에 계류중인 경우
5. 배정 받은 동아리실과 비품에 대해 파손 및 오손, 구조변경을 한 경우
6. 기타 학교규정을 위반하여 동아리 단체가 징계를 받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심히 손상시켰을 경우.

제10조(산업체 인사) 동아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련 산업체 인사를 초빙하여 상호 정보교환, 기술지도 및 협의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재정 및 평가) 동아리의 운영경비는 회원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경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평가 기준과 평가위원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